

201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 집 요 강**



**세 종 대 학 교**

입학안내

☎ 02-3408-3456, 4455

# 목 차

I. 전형일정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I.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3
IV. 서류제출	6
V. 전형방법	8
VI. 지원자 유의사항	9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환불	11
VIII. 각종 양식	12

	전형일정
--	------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7. 7. 3(월) 09시 ~ 7. 6(목) 17시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추후 공지	
서류제출	2017. 7. 3(월) 10시 ~ 7. 7(금) 17시 (방문제출 시간 : 10시 ~ 17시)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교 입학과로 제출 - 주소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입학과(집현관 206호) - 등기우편은 7. 7(금) 국내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수험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안내	2017. 7. 12(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a> )를 통해 안내 ( <b>개별 통보하지 않음</b> )	
영어 필답고사	2017. 7. 15(토) 10시 ~ (09시 30분까지 입실)	▶ 본교 지정장소 ( <b>신분증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b> )	
최초 합격자 발표	2017. 9. 1(금) 17시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a> )를 통해 발표 ( <b>개별 통보하지 않음</b> )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7. 12. 18(월) 09시 ~ 12. 21(목) 16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고지서를 확인한 후 지정된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함 ▶ <b>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 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b>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017. 12. 21(목) 20시 이후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a> )를 통해 발표 ( <b>개별 통보하지 않음</b> )
	2차	2017. 12. 26(화) 20시 이후	▶ <b>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 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b>
	최종 (전화 개별통보)	2017. 12. 27(수) 21시 까지	▶ 연락 가능하도록 전화대기 요망 ▶ <b>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 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b>
잔여 등록금 납부 (등록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2018. 1. 31(수) 09시 ~ 2. 2(금) 16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잔여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 후 지정된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함 ▶ <b>지정된 기간 내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 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b>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 공	입학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무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27	2	32	
		국제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108	10		
		역사학과		18	1		
		교육학과		27	2		
	사회과학	경제통상학과		44	4		
		행정학과		33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4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26	12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22	12		
		법학부	법학전공	36	3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응용통계학전공	49	4	14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함
		물리천문학과		59	5		
		화학과		45	4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148	14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10	21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130	13		
		정보보호학과		30	3		
		소프트웨어학과		60	6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4		
		지능기전공학부	무인이동체공학전공 스마트기기공학전공	142	14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선택전공	100	5 5		
	공과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제)	102	10		
		건설환경공학과		60	6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8	4		
		에너지자원공학과		45	4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130	13		
		나노신소재공학과		90	9		
원자력공학과			20	2			
예체능	예체능	회화과		36	-	모집하지 않음	
		패션디자인학과		36	-		
		음악과		40	-		
		체육학과		36	-		
		무용과		36	-		
		영화예술학과		45	-		
<b>계</b>						<b>46</b>	

※ 상기 모집단위(전공) 및 입학정원은 학칙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III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국내 12년 기준)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2016년 4월 1일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 정원무관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졸업학년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 ※ 국내외 비인가 학교 및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1.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 격 요 건	
정원 외 (2%)	영주교포의 자녀	재외국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비연속 4년) 이상 이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등)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비연속 4년) 이상 이수한 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비연속 4년) 이상 이수한 자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본인만 외국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인으로서)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이수한 자 ※ 복수(이중)국적자는 지원 불가, 부모의 국적 및 거주(근무)기간과 무관함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 부모의 국적 및 외국 거주(재직) 기간과는 무관함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 부모의 국적 및 외국 거주(재직) 기간과는 무관함
		결혼 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교류센터 ☎ 02)3408-3973(한국어), 4408(영어), 3353(중국어) 로 문의 바람

#### 2. 해외근무자의 범위

해외근무자	인 정 범 위
해외근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직원	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③ 내국법인으로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3. 외국학교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2) 부모가 거주(근무)한 국가에 소재한 정규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함  
 (단, 지역, 종교, 전쟁, 공산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

- 1)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 과정(6년-3년-3년-4년)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학기간을 산정함  
 ※ **입학일이 4월인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자는 3월말까지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2)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수학한 자의 교육과정 인정기준  
 ㉠ 해당국(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함  
 ㉡ **해당국(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혼합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단, 대학과정을 포함하여 12년간 이수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음
- 3) 13년제 교육과정 이수자는 11학년(국내 교육 과정상 10학년)부터 고교과정으로 인정함
- 4) 국내외 비인가 학교 및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5) 국내외 학교 간 1개기(6개월)를 초과하여 학년을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6) 보호자의 외국근무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시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7)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입 시 신입학이 아닌 전입한 경우에만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인정함  
 ※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을 이수하였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전입 시 신입학인 경우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8) 조기졸업은 총 재학기간이 1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 9)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다. 고등학교 졸업 인정기준

- 1)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라도 외국고등학교로 전학하여 12년 이상의 전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 국내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에서 국내의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12년 이상의 전체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재외교포 모국수학자)

#### 4. 외국 거주(영주), 근무, 체류 인정기준

##### 가. 지원자격별 기간 인정범위

(단위 : 년)

구 분			학생	보호자(부 또는 모)			배우자	
			재학 및 거주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정원 외 (2%)	영주교포의 자녀	연속	3	-	3	2	3	1 ½
		비연속	4	-	4	3	4	2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연속	3	3	3	2	-	-
		비연속	4	4	4	3	-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연속	3	-	3	2	3	1 ½
		비연속	4	-	4	3	4	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본인만 외국인)	연속	3	-	-	-	-	-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연속	12	-	-	-	-	-

※ 학생의 기간산정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으로 인정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나. 외국 근무, 거주(영주),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기간의 시작	기간의 종료
영주기간	해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	본교 자격인정 기준시점(2018년 2월말)전까지 해당국에 영주한 기간
근무기간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근무 발령일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근무 종료일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의 「해외근무 확인서류」, 학생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외 거주·체류 기간을 산정함

※ 재학 인정기간 중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 IV 서류제출

##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자격구분	정원 외(2%)				정원무관			비고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본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0	제출서류 목록표		본교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하는 서류명에 √ 체크)							
1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	●	●	●	●	●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접수완료 후 출력 가능)
2	초등학교 재학사실 또는 성적증명서 중·고등학교 재학사실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b>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sup>주)1</sup></b>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 가능) ※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3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	●	●	●	●	●	●		재학한 외국고교 수 만큼 작성
4	부·모·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	●		● (학생만)				거주국 재외공관 또는 국내 외교부
5	부·모·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sup>주)2</sup> (학생만)	● (학생만)	● (학생만)	● (학생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공공기관 인터넷 발급민원(정부)
6	학생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7	부·모·학생의 여권 사본	●	●	●		● (학생만)		● (학생만)		국적 및 사진 부분을 복사
8	<b>보호자 해외거주(근무) 증빙서류<sup>주)3</sup></b>	●	●	●						
9	국적상실확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적등본)	●			● (학생만)					
10	외국국적 증명서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 (학생만)	● (학생만)				국적 및 사진 부분을 복사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해당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2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13	혼인관계증명서							●		
1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15	고교졸업학력인정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시도 교육청 발급
16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만 제출							
17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1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 외교부(<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참고

주)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본인)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

주)3 보호자 해외거주(근무) 증빙서류 : 외국기관 발행 서류는 해당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것

※ 영주교포 :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 해외근무자 : 본사 발행 해외파견 기간이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해외지사 설치인증서(해외직접투자승인서)

※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초청장 또는 추천서

※ 기타 재외국민 : 해외 거주 또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현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외국정부 발급), 사업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 현지법인 근무자 : 법인등록증(외국정부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 해외연수, 유학생 : 유학사실증명서, 여권 상의 유학비자 사본, 보호자의 성적·재학증명서 등

- 기타 :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



##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목록표(체크)와 함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본교 입학처에 방문 후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2)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
- 3)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상에는 **해당기간(입학·졸업일, 전입·전출일, 근무일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재학일자**는 **최소 월 단위까지는 기재**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졸업 또는 재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가 졸업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2)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3) 문의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 라.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함

### 마.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바. 부·모의 근무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자는 지역·종교·공산권 등의 특성상 제3국 수학이 불가피하였음을 나타내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 1부를 첨부해야 함

### 사.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경우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과로 제출해야 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아.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자 및 지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자.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차.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사전 공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정원의 2% 선발)의 지원자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 지원자격을 준용하여 변경할 예정이오니 입시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장 공통 지원자격]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V 전형방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전형일	비고
영어 필답고사 100%	2017. 7.15(토) 오전 10시	※ 전형일 09시 30분까지 입실완료

## 2. 전형 시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고사장, 수험생 유의사항 및 필답고사 응시요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 나. 지원자는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고사에 임하기 바람
- 다.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 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학자격을 박탈하며, 제출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 마. 고사에 결시한 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바. 답안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함
- 사. 표기한 답안은 고칠 수 없으며, 이중표기·낙서·답안을 고친 경우에는 해당문항은 ‘0’ 점 처리함
- 아. 고사실 내에는 전자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사전 등)를 지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개시일 이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단, 우리나라보다 졸업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18년 3월말까지 졸업 시 가능**]
- 차. 모든 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름
- 카. 입학 후 제반 규정은 본교 학칙에 준함
- 타. 본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준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3. 선발기준

- 가. 정원 외
  - 1) 모집인원의 100%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의 총점순에 따라 선발함
  - 2) 동점자 발생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 나. 정원외관 :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함
- 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4. 서류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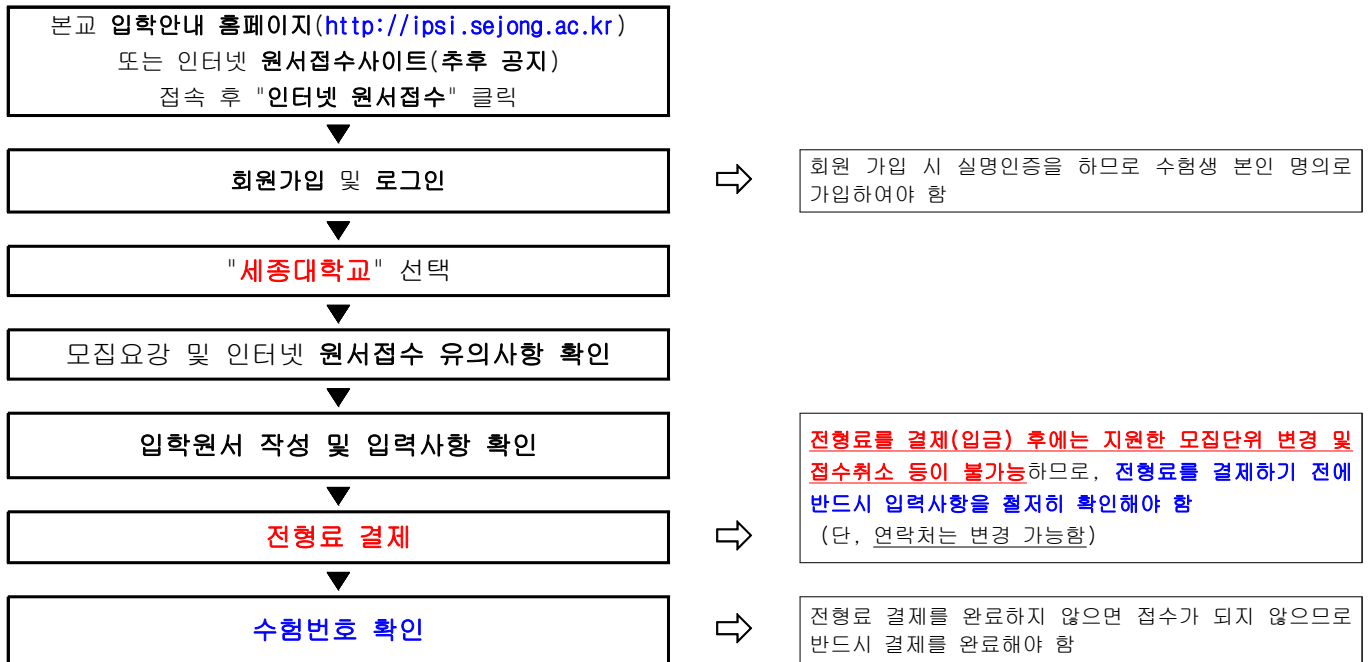
- 가.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사실조회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므로 일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 나.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함

## VI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바람
- 나. 이미 제출한 원서와 제출서류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추천 절차(주무부장관·재외공관장·시도교육감)를 거치지 않으므로 지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 해외거주, 체류, 재학 사실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
- 라.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에서 **6회(지원한 전형 수)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는 포함되며, 산업대학·전문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됨
- 마.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는 타 대학 및 본교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복수지원금지 위반자로서 모든 학교의 합격이 취소됨
- 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사. 상기 라항 ~ 바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2.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2017. 7. 6(목) 17:00]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뒤의 일곱 자리는 1000000(남자), 2000000(여자)으로 입력함
- 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됨
- 라.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접수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 함
- 마.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서 접수절차를 진행해야 함
- 바. 원서접수 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긴급한 경우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함
- 사. 출력한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아.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자.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공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바람

#### 4. 전형료

구분	지원 자격	전형료
정원외	영주교포의 자녀	158,000원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8,000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전형료에는 원서접수 수수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5. 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사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  
(단, 서류제출 기간[2017. 7. 3(월) ~ 7(금)]내에 '입학원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환불금액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8,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6. 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편의 제공

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본교에 통보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나.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7. 기타 사항

가. 기숙사 안내

- 1) 새날관 행복(공공)기숙사는 총 716명 규모의 기숙사로 침대, 책상, 욕실, 세탁실, 휴게실, 푸드코트, 편의점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2인 1실 형태로 운영
- 2) 기숙사 홈페이지 (<http://happydorm.sejong.ac.kr>)를 통해 신입생은 1~2월 중 입사신청을 받으며, 거주기간은 4개월(학기), 6개월(반기) 중 선택
- 3) 공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로 건립되어 저렴하게 운영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월 248,000원)
- 4) 신청 가능지역은 우선선발 지역(※서울, 경인지역 제외) 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  
☎ 관련문의 : 기숙사 생활지도실 02-3143-8200 ~ 8203

나. 휴학

-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2)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적과 02-3408-3038

##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환불

### 1.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합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함(개별 통보하지 않음)
- 나. 합격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등록금 고지서 포함) 등을 확인하여 등록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합격자로 확정함

### 2. 등록기간

- 가. 등록예치금 납부 : 2017.12.18(월) 09시 ~ 12.21(목) 16시 (4일간)
  - 1)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는 합격자 발표 시부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 2) 등록예치금을 2017.12.21(목) 16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나. 잔여등록금 납부 : 2018. 1. 31(수) 09시 ~ 2. 2(금) 16시 (3일간)
  - ※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잔여등록금 및 자율적 경비 납부(금액은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시 공지)
  - ※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였어도 기간 내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합격을 취소함

### 3. 환불조건 및 절차

환불조건	이미 납입한 등록(예치)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환불함	
환불절차	①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 등록포기 메뉴에서 등록포기(예치금 환불)신청서를 작성 ②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예치)금을 환불 ※ 자세한 절차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	
환불기간 및 유의사항	등록포기 신청기간	2017.12.22(금) ~ 12.27(수)
	등록(예치)금 환불기간	2017.12.22(금) ~ 12.28(목) 10시 ~ 16시 (주말, 공휴일 제외)
• 본 대학교에 등록 후 타 대학에 추가(충원)합격하여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환불절차에 따라 등록포기 신청을 먼저 하고 타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4. 입학 이후 등록금 반환

-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나.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다.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함

### 5.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가. 원서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나.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 성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제출
  - ※ 입학일 이전까지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 6. 모집단위내 전공결정

학부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학생 자신이 속한 모집단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신청하고 학부성적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표

<b>지원자 성명</b>		<b>수험번호</b>	
<b>비상연락처1</b>		<b>비상연락처2</b>	
<b>지원 자격구분</b>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해외근무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본인)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재외국민)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결혼이주민)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새터민)	
<b>지원 모집단위</b>	학과(학부)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1	지원자격 심사신청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2	초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중·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학력조회 동의서(재학한 외국 고등학교만 작성)	
4	부·모·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5	부·모·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	
6	학생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7	부·모·학생의 여권 사본	
8	보호자 해외거주/근무/영주 증빙서류	
9	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해당자만 제출]	
10	외국국적 증명서(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해당자만 제출]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12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결혼이주민]	
13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주민]	
1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15	고교졸업학력인정서 [북한이탈주민]	
16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만 제출]	
17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서류 목록표(본 양식)와 함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 **외국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
- ※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For verification of educational record)



##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Korea

Tel:+82-2-3408-3456 Fax:+82-2-3408-3556 e-mail: ipsi@sejong.ac.kr http://www.sejong.ac.kr

<b>School Name</b>	_____
<b>Address</b>	_____
<b>Phone Number</b>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해외학교에 등록된 본인이름)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_\_\_\_\_, who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ejong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deeply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 For your reference, please se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Dong Il Lee

Vice President, Office of Admission \_\_\_\_\_

###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ejong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18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Sejong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ejo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b>Written by applicant</b> (지원자가 기록)		<b>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b> (해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b>Date of birth</b>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b>Correct</b>	<input type="checkbox"/> <b>Incorrect</b>
<b>Date of admission</b>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b>Correct</b>	<input type="checkbox"/> <b>Incorrect</b>
<b>Date of graduation</b> (transfer to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b>Correct</b>	<input type="checkbox"/> <b>Incorrect</b>
<b>Name and Signature</b>		<b>Additional comments</b>	
<b>Date</b>		<b>Signature and Title</b>	

일자표기 Ex) 05 - 01 - 2017

Month - Day - Year

※ 외국에서 재학한 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 (노란색 배경부분만 지원자가 기록)